

『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상 제18조(성희롱 금지) 조항의 보완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의장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운영위원회 위원
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